

# 장기보험 직업급수 변경동의서



계약번호		상품명	
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명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가입하신 장기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현재 직업으로 계약변경 됨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 피보험자 직업급수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직업명	상해급수	직업명	상해급수

※ 상해급수별 위험도 : 1급 < 2급 < 3급

## ■ 관련 약관조항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①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①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직업사항 미변경 시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과 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변경된 직업과 관계 있는 사고로 청구 시)

※ 계약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약관리 지점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인)

피보험자 : (인)

